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 - 196호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수출연구사업단)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수출연구사업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7년 5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 □ 공고목적 : 수출유망 품목별 수출연구사업단* 선정을 위해 대상 기과 선정을 위한 **기획연구 공고**
 - * 수출유망품목을 선별하여 전체 수출과정(생산·가공·유통·검역·수출)에 걸친 현장애로 및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출지원 방식 운영
 -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사업목표 수립, 시장분석, 생산에서 수출 까지 전과정에 걸친 현장애로 발굴, 연구개발 전략 마련 및 향후 5년간의 연구 추진방향 정립 등 지원
- □ 대상품목 : 정책부서에서 제안한 26개 품목

구분	품목
농축산물	사과, 배, 포도, 참다래,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인삼, 버섯, 화훼류 종묘,
(12)	닭고기, 한우
가공품(7)	계란가공품, 떡볶이, 기능성제품(한약재), 과채류 주스 등 가공품, 식용곤충, 삼계탕, 반려견 간식
기자재(7)	스마트팜, 농기계, 농약, 비료, 유기농업자재(생물농약, 생육촉진제, 유기 질비료, 병해충 방제제 등 세분화 가능), 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의약품

* 미 반영 품목을 추가시에는 반드시 정책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신청 가능

-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한해 기획연구비를 지원하고, 기획 연구 결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상위과제에 대해 '17년 예산 범위 내 후속연구* 지원 예정
- * 과제당(품목별) 5년(2+3년) 이내, 연간 평균 5억원 후속연구지원 예정
- □ 기획과제 선정·지원: 20개 과제, 과제당 2개월 이내, 2천만 원 이내 지원
 - * 품목별 2개 이내 기획 지원 가능
 - ※ 공모과제의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1>의「제안요구서(RFP)」 참조
 -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공고기간 : '17. 5. 19.(금) ~ '17. 6. 19.(월), 32일간
- □ 접수기간 : '17. 6. 2.(금) ~ '17. 6. 19.(월), 18:00 까지

2 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기관 신청자격
 - 기획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으로 **단일구성**(협동, 위탁기관 없음)
 - * 협회, 단체, 수출업체, 대학 등
 - ※ 협동연구팀은 기획연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기획연구결과 보고서에 제시
 -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
 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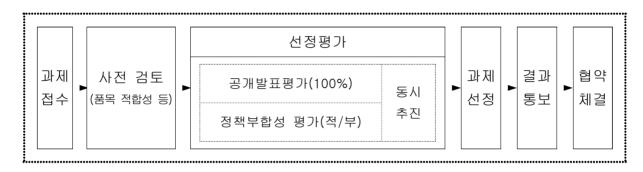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 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rightarrow 로그인 \rightarrow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rightarrow 과제 접수 \rightarrow 신청내용 입력 \rightarrow 신청서류 업로드 \rightarrow 접수완료 \rightarrow 접수증 수령
- <u>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u>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 제출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붙임 2 서식 참조, 별첨된 서류 포함)
- ※ 모든 제출서류는 <u>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u> <u>서명</u>을 날인하여야 함
-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 개발과제의 선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절차

4



- 공개발표평가 점수를 100%로 반영하여 산출한 종합점수로 평가함
- 운영규정 제1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계획서의 양식은 붙임의「제출서류 서식」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름
 - ※ 평가절차별 세부사항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연구사업단 시행 계획 공고 신청요강」참조
-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문의처 및 기타

5

- □ 관련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의 제안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 공고문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평가원 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개인 사유에 의한 연장은 불가)
-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문의처(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031-420-6756)
 -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일정 관련 : 수출·사업화팀(031-420-6794, 6792)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031-420-6842, 6844, 6846)

<붙임 1> 수출연구사업단 제안요구서(RFP)

<붙임 2> 수출연구사업단 추진 계획

<붙임 3> 수출연구사업단 기획연구계획서 서식(별첨포함)

붙임 1

수출연구사업단 제안요구서(RFP)

과제명	수출연구사업단 사전기획 연구					
	사업명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내역사업	수출전략형상품개발		
과제개요	과제유형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17년 출연금		
	기획연구	2개월	_	2천만 원 이내		

※ 제시된 과제명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필요 ○ 품목별 생산부터 유통·가공. 현지 수출까지 전 주기에 걸쳐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여 R&D로 해결하고, 연구개발 결과가 수출까지 직접 연계되는 수출사업화 모델 구축 연구목표 ※ 1단계(사업단별 상세기획 지원, 2개월) → 2단계(현장중심 연구, 2년) → 3단계(수출 연계 연구, 3년) 방식 추진 ○ (대상품목) 총 26개 품목 구분 품목 농축산물 사과, 배, 포도, 참다래,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인삼, 버섯, 화훼류 종묘, 닭고기, 한우 (12)계란가공품, 떡볶이, 기능성제품(한약재), 과채류 주스 등 가공품, 식용곤충, 삼계탕, 가공품 반려견 간식 (7) 스마트팜, 농기계, 농약, 비료, 유기농자재(생물농약, 생육촉진제, 유기질비료, 병해충 기자재 방제제 등 세분화 가능), 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의약품 ※ 정책부서에서 제안한 품목으로 추가시에는 정책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신청 - (기획지원대상 선정) 품목별 최대 2개 이내. 총 20개 과제 이내에서 기획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2단계 후속지원 10과제 선발 예정 ○ (추진방식) 1단계(사업단별 상세기획 지원, 2개월) → 2단계(현장중심 연구, 2년) → 3단계(수출연계 연구, 3년) 방식 추진 < 수출연구사업단 추진 체계 > 주요

주요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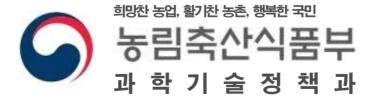
- (연구내용) 수출유망 품목별 연구개발 및 수출사업화 모델 구축
- (기획지원, 1단계) 수출목표수립, 수출전략 마련, 현장수요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 시장조사 등 (2천만 원/2개월)/1단계 평가를 통해 상위과제에 한해 2단계 지원
 - * 기존 농진청에서 중점 연구하고 있는 신품종 개발. 일반 재배기술 등은 제한
- (후속지원, 2단계) 기술개발을 통해 현장애로를 해결하고, 수출업체 등과 협업하여 직접 수출까지 진행하는 연계 모델 제시(3단계 : 직접 수출 연계) (연간 4억 원/2년+3년)
- ※ 2단계 연구 성과를 심층 평가하여 3단계 후속지원 여부 결정

연구팀 구성요건

- \bigcirc 수출업체를 반드시 포함하고, 연구자 및 생산자단체 등과 컨소시엄으로 연구팀 구성
- ※ 품목 담당부서 및 수출진흥과가 PM(Project Manager)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제 선정 후 연구방향 조정, 진도·성과관리 등 전담 예정
- 목표성과 사업기획보고서(수출목표, 기술개발로드맵, 정책연계방향 등 포함)

2017년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추진 계획 - 수출연구사업단 운영 -

2017. 5.



1. 수출연구사업단 개요

- □ (배경) '수출연구사업단' 운영을 통해 농식품 수출활성화를 과학기술 측면에서 종합 지원
- O 수출유망 품목을 선별하여 전체 수출과정 상의 현장애로 및 장애 요인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 연구개발 체계 마련
- □ (대상품목) 수출 관련 부서(수출진흥과, 품목관련 부서 등) 추천 총 26개 품목

구분	품목
농축산물 (12)	사과, 배, 포도, 참다래,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인삼, 버섯, 화훼류 종묘, 닭고기, 한우
가공품(7)	계란가공품, 떡볶이, 기능성제품(한약재), 과채류 주스 등 가공품, 식용곤충, 삼계탕, 반려견 간식
기자재(7)	스마트팜, 농기계, 농약, 비료, 유기농업자재(생물농약, 생육촉진제, 유기 질비료, 병해충 방제제 등 세분화 가능), 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의약품

- ☐ (예산)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17년 48억 원(수출전략형상품개발 내역)
- O ('17년) 기획연구 지원(20개 이내, 4억원), 총괄사무국(4억원), 10개 수출연구사업단 후속연구(40억원, 품목별 4.0억원)
- O ('18~'21년) 품목별 연간 평균 5억원 지원 예정(4년간 19.8억원)

<사업단별 5년간('17.8~'21.12) 투자 예산>

협약	'17.8~'18.4 (9개월)	'18.5~'19.2 (10개월)	'19.3~'19.12 (10개월)	'20.1~'20.12 (12개월)	'21.1~'21.12 (12개월)	합계
예산 (백만원)	404	450	450	540	540	2,384

2. 추진 방향

- □ (목표) 수출연구사업단 본격 운영 3년차('19년부터)부터 연간 수출 30억원 이상 품목 8개 이상 도출
 - O 연구자,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등과 컨소시엄으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 O 연구에 참여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기여도가 반영된 수출 실적(수출액)으로 산정
 - * 수출목표는 기획지원사업 신청시 명확하게 제시
- □ (추진 단계) 수출 현지 시장조사부터 현장애로 수요 발굴, 기술개발 로드맵 등을 구체화하고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수출 까지 연계를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지원

< 수출연구사업단 추진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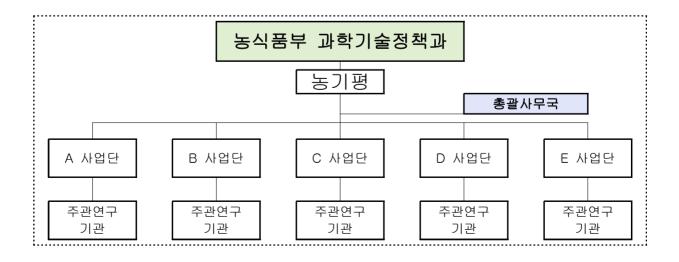
- O 정책부서 대상 수출유망품목 추천
 - * 정책부서에서 제안한 품목에 한해 공고하며, 경쟁형 R&D 촉진을 위해 품목별 2개 이내 기획 지원, 최대 20개 까지 지원
- 1단계(사업단별 상세기획 지원, 2개월) → 2단계(현장중심 연구, 2년) →
 3단계(수출연계 연구, 3년) 방식 추진
 - * 통합마케팅 조직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사업단에 대해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및 단계평가·중간평가 등에서 중단과제 등이 발생시 우수과제에 예산 배정
- O 2단계 연구 성과를 심층 평가하여 3단계 후속지원 여부 결정
 - * 3단계 후속지원 평가는 수출전문조직, 관련단체, 협회 등 현장 전문가 중심 평가 실시

- 【연구범위】 '생산→유통→수출' 전 주기에 걸쳐 수출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
 - O 현장수요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 시장조사 등은 **사전 기획단계** 에서 구체화하여 제시
 - * 기획단계에서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정책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기술개발 계획 도출
 - O 기술개발을 통해 현장애로를 해결하고, 수출업체 등과 협업하여 직접 수출까지 진행하는 연계 모델 제시(일부 직접 수출 가능)
 - * 선정된 사업단에는 R&D뿐만 아니라 정책사업과 연계 지원 계획
 - O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신선농산물 포함)하여 **직접 수출까지 연계**
 - 기존 기술 패키지화 및 고도화, 응용 기술 개발 등 중점 연구
 - * 기존 농진청에서 중점 연구하고 있는 신품종 개발. 일반 재배기술 등은 제안

3. 사업단 운영

□ (기본 방향) 수출 관련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결과가 수출
까지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수출사업화 모델 구축

<수출연구사업단 운영 체계>



- O 사업단별 연구 조정(협업연구과제 발굴·관리), 품목별 수출전략마련, 정책부서 및 수출관련 기관(aT 등)과 중개역할, 수출 성과 및 실적 관리 등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괄사무국* 설치 운영
 - * aT, 농경연, 기타 수출 관련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 □ (주체별 역할분담) 과학기술정책과, 정책부서, 농기평, 연구사업단 간 긴 밀한 협력 하에 종합적인 사업단 관리 추진

<수출연구사업단 참여 주체별 역할(안)>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	• 사업 기획, 연구사업단 총괄 관리, 정책부서와 사업단간
정책과	연계, 성과 총괄 관리 등
~~~~ 정책부서	• 연구방향 조정, 정책 연계성 제고, 해당 연구사업단 성과 관리
07TN	등 PM(Project Manager) 역할 수행
농 기 평	• 연구사업단 선정·평가, 사업관리, 정산, 연구관리 컨설팅,
등 기 등 	성과관리 지원 등
총괄사무국	• 협업연구 발굴, 사업단간 역할 조정, 정책부서와 중개역할,
공일사구식	검역 등 수출 애로 해결, 수출 실적 관리, 품목별 수출
G コ N O Cr	• 수출 목표 설정, 수출전략 마련, 현장애로에 기반한 연구
연구사업단	개발, 개발된 성과를 활용한 수출 실행 등

- □ (기타 사항) 사업단 외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실용화재단과 협업을 통해 기존 국가 R&D(농진청 등)를 통해 개발된 기술 및 특허 등에 대한 상담 및 이전 지원
- O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업하여, 수출관련 정보 및 컨설팅 지원
- * 품목·분야별 해외시장 동향, 수출시장별 소비자기호·상품수요·틈새시장· 수출입 검역제도 등 수출에 필요한 정보 지원
- O 우리부 '농식품 수출대책' 등 각종 정책에 관련된 정책자금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단계별 중점 추진 요지〉

구분	1단계 (2개월)	2단계 (2년)	3단계 (3년)
연구 목표	-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 목표 수립, 시장 분석, 생산~수출까지 전과정에서 현장 애로 발굴, 연구방향 정립	분석, 생산~수출까지 전과정에서 현장 개발 등 수출활성화 기반기술 확보	
연구 방향	- 기술수준 및 시장동향 등 조사·분석 -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현장수요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	- 수출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 패키징, 응용기술 개발(제품 개발, 신선도 유지 등) 등 수출활성화 기반 확보	- 기반기술 적용을 통한 수출제품화 및 수출 애로사항 해결 - 수출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해결 등
연구팀 구성	- 수출기업, 생산자단체, 학계 등 사전 기획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 연구기관 주도 생산자조직, 지자체, 수 출업체 등 연구사업단 구성	- 수출업체 주도 연구기관, 생산자조직, 지자체 등 연구사업단 구성
예상성과	- 사업기획보고서 * 목표, 기술개발로드맵, 정책연계방향	- 현장 적용 모델, 기술개발 실적, 현장애로 해결, 제품개발 등 수출연계 실적 등	- 수출대책보고서, 수출실적(물량, 수출액), 기술 개발 성과, 정책 연계 수출 지원 성과
평가 주안점	- 필요성, 품목 산업 기반, 수출목표 명확성, 정책부서·생산자조직·수출업체, 현장 애로 발굴 적절성, 연구개발 방향 적절성 등		연구계획 우수성(핵심이유, 한계), 연구 기존 사업과 차별성(aT, 정책보조사업 등) 구팀의 전문성·역량, 파급효과 등
후속조치	- 사업기획보고서 등 2단계 선정평가에 활용	- 사업성과 심층평가 등을 통해 후속지원 여부를 판단, 연구성과 추적평가 실시	- 과제 종료시 품목별 수출대책보고서 마련, 사업단 독립 운영 모델(자립화) 수립 및 활용, 연구성과 추적평가 실시 등

## 4. 향후 계획

- □ 기획지원 공고 및 선정·평가
  - 과정 : 품목 추천(부서) → 공고 → 선정 · 평가 → 기획연구지원 → 후속 연구지원 평가 순으로 진행
  - 부내 설명회를 통해 정책부서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상 품목은 부서에서 추천한 품목에 한해 공고 예정

<단계별 주요 세부 일정(안)>

주요 작업	일정	비고
• 부서 품목 추천	5.1. ~ 5.12.	품목별 담당부서
- 기획지원 공고	5.19. ~ 6.19.	
- 기획지원 평가	6.22. ~ 6.27.	과학기술정책과 (농기평)
- 기획연구지원(2개 월)	6.28. ~ 8.18.	

## □ 본 연구 지원

○ 일정 : 기획결과 평가('17. 8월) → 연구 추진(8월) → 중간성과 평가 ('18.2월) → 연차 성과 및 차년도 계획 평가(7월말)

## 붙임 3

## 수출연구사업단 기획연구계획서 서식(별첨 포함)

## 기획연구계획서

관리 <i>향후 기재</i>		보안	등급 분류		일반과제					
번호		구 기계 청 시 부여)		라제 사유 사제에 한함)		등급 제안서 내 보안 +항목 번호기재		-여부	고가	□부
え	신청품	목								
	사업'	명				수출전략기술개	발사업			
사약	접추진	<u>]</u> 형 태		기획지원과	·제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i -i		국 문								
과 제	병	영 문								
			(소속기	_속기관 명칭)		(과학기술인등록변	<u></u> 보호)		부서 전화) 부서 팩스)	
주 관 약	연 구	책 임 자	(이름)	(이름)		(e-mail)		(전화번호)		
			(지역)	역)		(전공)		(학위)		
				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단위: 천원)		
	루 ( 협 구 ᠴ	를 동 ) 마 제	※ 기재하지 말 것(해당사항 없음)							
				연구개발비	및 참여의	연구원수 (단위: 천	원, 명)			
연모	Ē	정부· 연구개		현금	기업체부 현물		정부외 출연금		합계	참 여 연구원수
1차년	년도 -	20,0	000	<b>※</b>	기재하지	말 것(해당사항	없음)		20,000	
총연구	· 연구기간 2017.06.28.~ .08.18.( 2개월 )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해당과제의 기획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① 주관연구기관장 : <i>(주관연구기관명)</i> 직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 기획단 운영 개요(20페이지 이내 작성)

신청품목					
과제명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역구개박	(지역)	(세부전공)		(학위)	
연구개발 소요비용					20백만원
<ul><li>※ 본 자료 작성</li></ul>	시에는 수출연구사업단의 사	-전 기획에	주안점을 두고 경	악성 요망	
ロ ムネ ベフカム					
Ⅱ 수출 연구사업 ┏	3단 운영 필요성 				
기 체다 프모이 .	수출 현황 및 국내 여건 분석	<del>با</del>			
	기술 현영 중 속에 역신 ·				
③ 해당 포모의	수출 현지 여건 및 시장 조/	사 계회			
		1 /11 -1			
④ 수출연구사업 	기획단 구성・운영 계획				

5 현장 애로 등 수요 발굴 계획
6 현장애로 해결 방향 및 관련 기술 수준 분석
7 연구의 중복성 회피 방안
8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등과의 협력 방안
9 해당 품목의 수출 정책과의 연계 방안
10 수출 목표 설정 및 타당성 확보 방안

## Ⅲ. 기획단 구성

#### 1. 기획단 편성표

과제구분	n H	과학기술인	소속기관명	7) 7	전공 및 학위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득기관병 /	직급	학위	연도	전공
7 -1								
주관								
연구기관								

## 2. 기획단 참여 연구원 역할

성 명	직위	참여내용	참여율(%)

※참여내용: 연구책임, 기술개발, 업무지원 등 상세업무 내역 기재

### 3. 연구책임자 주요 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주관연구책임자 특허, 실용화 실적 : 특허, 실용화 실적을 10개 이내로 서술

### 4. 해당 품목과 관련한 연구책임자 선행연구 실적(특허, 실용화 실적 등 5개 이내)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공란으로 기재

## 5. 연구책임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함)

과제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원) (과제신청자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참여율
주관 연구기관						
10十71ゼ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

### Ⅲ. 기획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 1. 당해연차 과제별 연구개발비 총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10-02	2-01
비목		연도		주관연구기관		비고
"  "	세목		금액	구성	비(%)	
	인건비	미지급용				
	인진미	지급용				
	학생인건비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	-н]				
	연구수당					
	연구개발비 총액			10	0%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단넌도 연구개발과제이므로, 1차년도에 해당하는 비목별 총괄 소요명세 작성
- 연구개발비 계상 시 부처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 2. 세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항목만 작성)

#### (1) 인건비

							코드번호	B-10-02	2-03-01-01
구분	인력	성명	직위	신규채용	실지급액	참여율(%)		합 계(A×B/100)	
1.5	구분	7878	म	구분*	(A)	(B)	현금	현물	미지급
	기존 :	홍길동	소장						
	인력								
71) H	인덕		소계	(나)					
내부 인건비		강감찬	<i>교수</i>	신규					
인선비	신규	이태백	대리	신규					
	인력								
			소계	(다)					
외부	기존	홍길동	소장						
	'								
인건비	인력		소계	(라)					
	총액(가=나+ 다+ 라)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목차 5-3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 '실지급액'은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 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됨
- 내·외부인건비 구분 :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내부인건비일 경우 '내부'로 표기하고 외부인건비의 경우 '외부'로 구분(부처별 규정 참고)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시 '신규'로 표기

#### (2) 학생인건비

- (2)-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 ① 학생인건비 소요명세

			코드빈	호	B-10-02	-03-0	1-02
구 분	월 급여	man-m 투입 ð		夸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급여와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함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 (2)-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삭제)

					코드	트번호	B-10	0-02-03-01-02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급여		여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원)
유관순								
황진이								
	합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 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4) 기획연구과제 추진비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10-0	02-03-01-05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국내 출장여비							
사무용품비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회의비							
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							
	총액					,	직접비의%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 (5)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코드번	호 B-10-0	02-03-01-04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금 액	비고
			(수량,건)	(천원)	,
인쇄비·복사·					
인화·슬라이					
드 제작비					
공공요금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기타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à _1 =					
속기료					
المحماييا					
기술도입비					
	시험·분석·검사				
연구개발서	임상시험				
비스활용비	기술정보수집				
	투허정보조사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r 총액			천원(현금	: 원)

### - 기술도입비 세부 내역

기술도입명	도 입 국	금 액 (단위 : 원)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刊	고
				기술도입의 know - how	형태(예 : 등)를 기재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 (6) 연구수당

(단위 : 천원)

		코드번호	B-10-02	2-03-01-06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코드번호	B-14	1-01-01
과제번호			
과 제 명			
막시시크		획	인
확인사항		예	아니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ul> <li>√ 주관·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3개를 초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li> <li>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li> <li>(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학학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건</li> </ul>	과하여 연구과제에 ②항의 예외조항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관연구기관, 관, 참여기업, 주관·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위 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중인	원이 정부부처 또		
<과제의 중복성>			
<ul><li>√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li></ul>	되는가?		

	코드번호	B-14	-01-02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우)>	구기관이 기업인 경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부도 상태인가?	또는 참여기업이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 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 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결기업은 예외)	금을 지원받은 경 경주 재기지원보증		

확인사항		확인	
확인사망	예	아니오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 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협약의 해약] 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 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과제평가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코드번호 B-14-02-01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 1. 수집·이용 목적
-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척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2.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 나.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 □ 참여인력

			코드번호	B-14-02-02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	서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 &}quot;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별첨 3] (※ 국·공립 연구소가 주관연구책임자일 경우에 한함)

## 승 인 서

과 제 명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세부전공)	(학위)

○ 연구목표 ————			
○ 연구내용			

본 연구과제는 기관 경상연구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구내용이 기관연구와 중복 되지 않음을 승인합니다.

> 년 월 일 연구기관장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